
『호모 미그란스』 편집·투고 규정

제 1 장 편집위원회

제 1 조 (편집위원회) 본 연구회는 학술지 『호모 미그란스 – 이주, 식민주의, 인종주의(Homo Migrans – Migration, Colonialism, Racism)』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, 소집, 의결)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조 (기능)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, 논문 투고 및 심사,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1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2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3.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.
 - (1)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
 - (2)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
 - (3)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
 - (4)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
 - (5)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
4.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,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/3의 발의로 소집한다.

5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단,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
6.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2 장 투고

제 4 조 (투고 자격)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.

제 5 조 (원고의 종류)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, 비평논문, 서평 및 기타로 한다.

제 6 조 (원고의 투고)

1.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.
2.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, ‘아래아 한글’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.
3. 투고 원고에는 필자의 소속, 지위, e-mail 주소, 핵심 주제어(Key Words)[한글(영문)], 국문 초록, 영문 초록, 참고 문헌이 첨부되어야 한다.
 - (1)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(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표기).
 - (2) 초록의 분량은 250단어(관사 포함)로 제한한다. 핵심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.
 - (3) 논문 본문 말미에 필자의 소속, 지위, e-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.
4.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5.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『호모 미그란스』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.

제 7 조 (원고작성요령) 투고 논문의 분량,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 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.

제 8 조 (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)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.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(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)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.

제 3 장 심사

제 9 조 (심사위원)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10 조 (심사 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.

1.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
2.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
3.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
4.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
5.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

제 11 조 (심사 결과 및 판정) 심사결과는 A(제재 가), B(수정 후 제재 가), C(수정 후 재심사), D(제재 불가)로 구분한다.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.

A, A: 제재

A, B: 제재

B, B: 수정 후 제재

A, C: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
A, D: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
B, C: 수정 후 재심사

B, D: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
C, C: 수정 후 재심사

C, D: 계재 불가

D, D: 계재 불가

제 12 조 (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)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3조 (심사 결과 통보)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
제 14조 (기타 원고 심사)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, 내용,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.

제 4장 학술지 발행

제 15조 (발행자):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.

제 16조 (발행횟수 및 일자): 연 2회,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